

## 2022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공고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특구 내 기업의 인공지능 산업 전환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·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“2022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5월 17일

광주광역시장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### I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

#### ■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구성

①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.....	3
②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성과 조사 분석 .....	9

#### ■ 신청방법 및 절차

##### ○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
##### -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
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www.innopolis.or.kr),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pms.innopolis.or.kr)

##### - 공고 및 접수기간

사업명	공고기간	접수기간
①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	'22. 5. 17(화) ~ 6. 16(목)	'22. 6. 9(목) ~ 6. 16(목), 15:00까지
②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성과 조사 분석	'22. 5. 17(화) ~ 6. 16(목)	'22. 6. 9(목) ~ 6. 16(목), 15:00까지

#### ■ 접수기간 및 방법

##### ○ (접수방법)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(pms.innopolis.or.kr)

##### ○ (접수기간)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

\* 접수기간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.

## ■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

-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사 업 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이 메 일
①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	광주연구개발 특구본부	이현호 연구원	062-603-5023	coffumer@innopolis.or.kr
②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성과 조사 분석		김현희 연구원	062-603-5014	khh0425@innopolis.or.kr

## ■ 기타사항

-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, 지원내용·조건, 접수방법 등은 “Ⅱ. 세부사업별 시행계획”에 따르며,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” 및 “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\*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,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·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

## 1

##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

## 1. 사업개요

## □ 사업목적

- 광주특구 내 기업의 AI (시)제품·서비스 제작 등 AI 역량 향상 및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하여 AI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

## □ 사업내용

- 광주특구 내 기업 중 AI 기업(전환예정 포함)을 대상으로 ①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, ②시험분석 및 제품인증, ③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
- \* 광주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연계 전후방 지원

## 2. 지원내용

## □ 지원규모

- 지원 과제별 최대 60백만원 이내 (총 사업비 400백만원)
- \* 지원분야 중복지원 시 과제당 60백만원 이내 선정가능하며, 지원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

## □ 지원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

- \* 수시 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## □ 지원대상

- 광주특구(광주광역시 소재) 내 기업 중 AI 기술\*을 활용하여 제품·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는 기업\*\*, 기존 제품·서비스 등에 AI\*\*\*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\*\*\*\*
- \* 머신러닝, 언어처리, 시각처리, 상황인식 기반 인공지능 기술 등
- \*\* 주관기관은 본 과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시제품 또는 POC(Proof Of Concept), 전통적인 아이템 AI전환 등을 진행하여야 함
- \*\*\* 지원하는 AI분야는 기획재정부(2020.07.14.) 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” 디지털뉴딜(①D.N.A 생태계 강화, ②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, ③비대면 산업 육성, ④SOC 디지털화), 그린뉴딜(⑤도시·공간·생환 인프라 녹색 전환, ⑥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 확산, ⑦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)에 부합하여야 함
- \*\*\*\* 기술사업화역량강화(R&BD), 연구소기업 씨앗자금, 혁신기업 도약지원,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과제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

□ 지원내용

- AI산업 진출·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요(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, 시험분석 및 제품인증, 마케팅 및 판로개척) 맞춤형 집중 제공

< 광주특구 인공지능(AI)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지원 분야 >

지원 분야	지원 내용	지원규모
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	■ 시제품 제작	40백만원 이내
	■ 고객 의견 반영 시제품 개선	
	■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	
시험분석 및 제품인증	■ 시험 분석	40백만원 이내
	■ 제품 인증(국내 인증에 한함)	
	■ 시험 분석 및 인증 컨설팅	
마케팅 및 판로개척	■ 국내외/산업별 시장 조사 및 BM 수립	20백만원 이내
	■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	
	■ 기업·제품 홍보, 전시회 등 참가지원	

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: 정부출연금의 10% 이상 현금 부담

□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 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2. 1. 1.)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  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- 「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」에 따라,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, 한시적으로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'사용기준'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·사용 가능

기 존	변 경
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	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(연구개발비 중 현금 50%범위 이내로 계상 가능)

<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분야 및 구체적 산정기준>

- ◇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,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 (별첨.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분야 참조)되는 경우에는,
  - 중소·중견기업인 수행기관(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)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
- ◇ 또한,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, S/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
- ◇ 단,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

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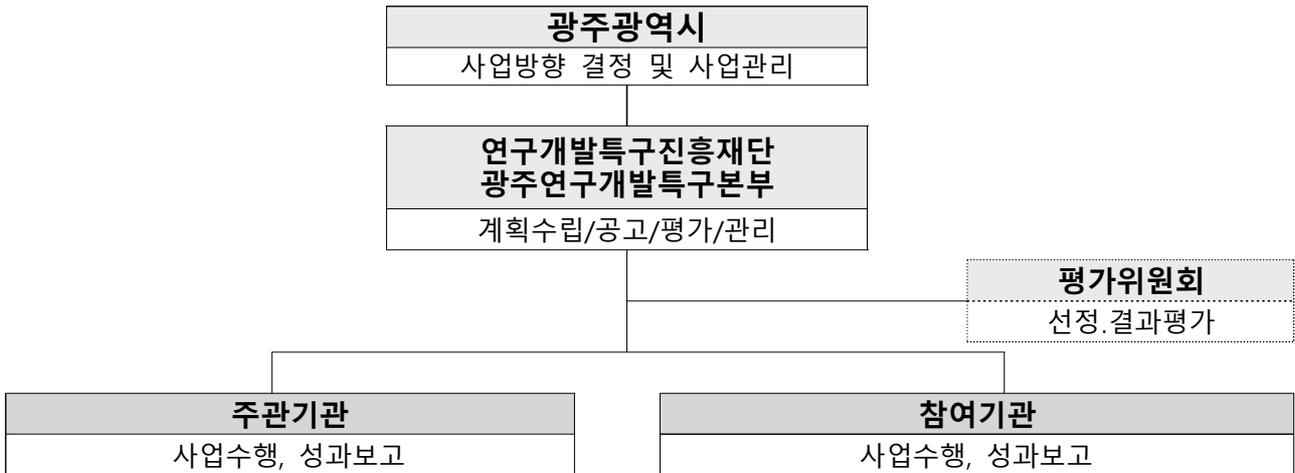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특구육성사업(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, 기술이전사업화사업, 연구소기업 성장지원(실증화 검증) 사업,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)을 수행 중인 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5호, '21.10.14.)」 '14.사전검토' 규정에서 "사전지원제외"에 해당될 경우

※ 주요 사전지원제외 대상 (세부 내용은 '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' 참조)

-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(채무불이행, 완전자본잠식 등)
-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국세/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휴·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

### 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추진체계



추진절차

절 차	일 정	주요 내용
사업공고	'22.5월	- 수행기관 모집 공고
신청서 접수	'22.6월	-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
선정(발표) 평가	'22.6월	-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, 지원대상 확정
협약체결	'22.7월	-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
사업수행	'22.7월~	- 사업수행
결과보고 및 정산	종료 후	- 사업결과 보고/최종평가/사업비 정산

\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, 신청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4. 평가항목·방법 및 유의사항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
지원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의 필요성</li> <li>• 신청지원 분야(AI 제품 서비스) 적합성</li> </ul>	20
AI 전문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</li> <li>• AI 전문인력 구성의 적합성</li> </ul>	20
사업계획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</li> <li>• 목표 수준 및 평가지표의 구체성</li> <li>• 추진전략 및 일정의 적정성</li> <li>•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</li> </ul>	40
지원효과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을 통한 고용, 매출 등 성과 증대 효과성</li> <li>• 향후 성과물 활용 계획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</li> </ul>	20

□ 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과제’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제외’로 분류함
- ‘지원 가능 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 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‘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’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- \* 단,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
- \*\*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\*에 따른 ‘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’에 해당하지 않으며, 연구자는 최대 5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
- \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
유의사항

공통사항	
가.	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- 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나.	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다.	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(단,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(증권시장의 상장), 인수합병, 자금조달(투자유치)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)
라.	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마.	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관련법령 및 규정

<b>근거법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</li> <li>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</li> <li>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</li> <li>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</li> </ul>
<b>관련규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</li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</li> </ul>

## 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사업공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[www.msit.go.kr](http://www.msit.go.kr)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>)
- 연구개발특구포털([www.innopolis.or.kr](http://www.innopolis.or.kr))
-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innopolis.or.kr>)

신청방법 :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innopolis.or.kr>) 통해 신청

□ 접수기간 : 수시접수(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, 예산 소진 시 마감)

\* 1차 접수 마감 기한 : 2022. 6. 16.(목), 15:00까지

□ 문의처

○ 담당부서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

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이현호 연구원	062-603-5023	coffumer@innopolis.or.kr

□ 제출서류

○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PMS에 업로드

\*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
번호	서류명	제출형식	서식	비고
1	사업 신청 공문	원본 1부 전자파일 (PDF)	-	모든 기관 제출
2	사업계획서		서식 1호 (별첨)	주관 기관 제출
3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	서식 2호	모든 기관 제출
4	사업자등록증		-	모든 기관 제출
5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		서식 3호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6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	서식 4호	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
7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	서식 5호	모든 참여연구원 날인하여 제출
8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	서식 6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9	표준재무제표*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*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(원본확인필증)		-	최근 3개년도('19~'21) ※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, 추정재무제표 제출
10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*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	-	최근년도기준, 주관/참여기업 모두 제출 (비영리기관 제외)
11	중소기업확인서* 또는 중견기업확인서* *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*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		-	주관/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

\* 추정재무제표(가결산)를 제출한 기관이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, 협약 시까지 '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.(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 시,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)

\*\*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: 중소기업확인서(<http://sminfo.smba.go.kr>), 중견기업확인서(<https://www.hpe.or.kr>)

- 주의사항 :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

### 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속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,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innopolis.or.kr>)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
 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
-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## 6. 기타사항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·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-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,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

## 1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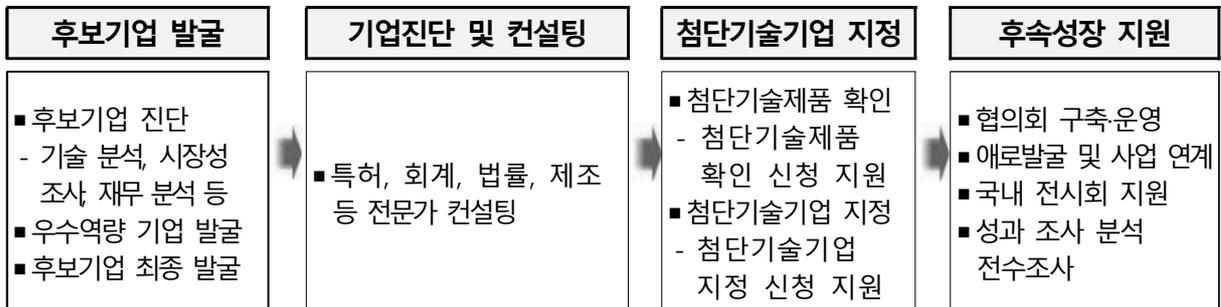
## □ 사업목적

- 광주특구 소재 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요건을 갖춘 후보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, 협의회 운영,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따른 성과 도출, 후속 지원 등

## □ 사업내용

- **(후보기업 진단·발굴)** 광주특구 소재 기업의 DB를 활용한 기술·경영 분석을 하고, 첨단기술기업으로 1~2년 이내 지정이 가능한 후보기업 발굴
    - (기업 진단)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술, 재무, 시장성 등 기업 진단 및 상담 지원
    - (후보기업 발굴) 기업 진단으로 자격요건 사전 검토하여 후보기업 발굴
  - **(전문가 컨설팅)** 예비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상 수요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
    - \* 기업 현황을 분석하고, 기업 수요에 맞는 특허, 회계, 법률, 제조 등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(변리사, 회계사, 변호사 등 전문가 풀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)
  - **(첨단기술기업 지정)** 후보기업 대상 첨단기술제품 확인 신청 및 지정 희망 예비기업 대상 첨단기술기업 지정(재지정) 신청 지원
  - **(후속 성장 지원)** 첨단기술 지정 기업 성과 조사 분석, 협의회 구축 및 운영 등
    - (성과 조사 분석) 첨단기술기업 지정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(세액감면, 매출액, 고용, 연구개발비 투자 등)
    - (협의회 구축·운영) 첨단기술기업 및 입주기업 대상으로 첨단기술과 기업 이슈 발굴 및 논의, 산업보안컨설팅 지원 등
- \* 첨단기술기업 및 입주기업별로 협의회를 2개 구성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추진

## 《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성과 분석 조사 프로세스 》



## 2. 지원내용

- 지원규모
  - 총 70백만원 이내 (1개 수행기관)
- 사업기간
  - 협약일로부터 '23년 1월말까지
- 지원대상
  -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성과 조사 분석이 가능한 기관(컨소시엄 구성 가능)
- 성과목표

연번	성과 목표	성과 지표	목표	구분
1	후보기업 진단 및 발굴	-특구 기업에 대한 기술, 재무 등 진단 컨설팅 -지정 요건 분석을 통해 후보기업 발굴	6건	정량
2	첨단기술제품 확인	-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 발굴 건수(신규)	3건	정량
3	첨단기술기업 지정	-첨단기술기업 신규 및 재지정	9건	정량
4	협의회 구축 및 운영	-첨단기술기업 및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(2개) *협의회 당 4회 이상(산업보안컨설팅을 포함)	8회	정량
5	전문가 컨설팅	-특허, 회계, 법률 자문, Mock-Up 등 *변리사, 회계사, 변호사 등 전문가 컨설팅	10건	정량
6	기타	-제도홍보, 애로발굴 및 사업 연계, 국내 전시회 지원	-	정성 정량
7	성과 조사 분석	-세액 감면, 매출액, 고용, 연구개발비 투자 등	-	정성 정량

\* 공고문에 제시된 목표 이외의 추가 목표(정량·정성)를 제시가능

- 민간부담금(현금) 비율 : 해당 사항 없음(100% 출연금 지원)
- 기술료 징수 : 해당 사항 없음

## 2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- 추진체계



추진절차

절 차	일 정	주요 내용
사업공고	'22. 5월	- 사업 공고
신청서 접수	'22. 6월	-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
선정평가	'22. 6월	- 서류검토 / 평가위원회 개최
협약체결	'22. 7월	- 평가결과 통보 /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 체결
사업수행	협약기간	- 사업수행
결과평가 및 정산	종료 후	-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, 사업비 정산

\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, 신청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4. 평가항목

-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수행기관을 선정 후 운영

구 분	평가 항목	비 중(%)
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 적정성 (45점)	○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	20
	○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25
추진역량 및 실적 (40점)	○ 수행기관의 전문성	15
	○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	25
사업비 적절성 (15점)	○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절성	15

#### 5. 신청방법 및 절차

신청기간 및 방법

- 사업공고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www.innopolis.or.kr),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 시스템(pms.innopolis.or.kr)
- 접수방법 :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(pms.innopolis.or.kr)
- 접수기간 : '22. 06. 09.(목) ~ '22. 06. 16.(목), 15:00까지

문의처

- 담당부서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 
(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(월출동 987) 광주이노비즈센터 10층)
- 사업담당자 연락처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김현희 연구원	062-603-5014	khh0425@innopolis.or.kr

□ 제출자료

-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PMS에 업로드

구분	제출서류	제출사항	비고
1	사업계획서(서식 1 ~ 4)	전자파일 (PDF) 업로드	-
2	사업자등록증		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(원본 대조필)
3	법인등기부등본		
4	최근 3년간 재무제표		-
5	유사사업 실적증명서		최근 3년 이내
6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	민간회사의 경우만 해당
7	발표자료(PPT)	별도 제출	발표평가일 확정 후, 별도 안내

## 6. 유의사항 및 관련규정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·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
□ 관련 법령 및 규정

-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